

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(생 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4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5. 트러스톤 재형 칭기스칸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p style="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<신 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4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5. 트러스톤 재형 칭기스칸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p style="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<u>6. 트러스톤 제갈공명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u>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 략) 4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u> 5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 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

<p>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이하 “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<u>6.</u>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이라 한다)</p> <p><u>7.</u> 환매조건부 매도</p> <p><u>8.</u>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<u>9.</u> 증권의 차입</p> <p><u>10.</u>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생 략)</p>	<p>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이하 “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<u>5.</u>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이라 한다)</p> <p><u>6.</u> 환매조건부 매도</p> <p><u>7.</u>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<u>8.</u> 증권의 차입</p> <p><u>9.</u>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생 략)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<u>1.</u> ~3. (생 략)</p> <p><u>4.</u>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5.</u>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6.</u>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<u>7.</u>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8.</u>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9.</u> <u>제1호 내지 제4호</u>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u>4.</u>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5.</u>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<u>6.</u>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7.</u>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8.</u> <u>제1호 내지 제3호</u>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
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

①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4. (생략)

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1. ~5. (생략)

③(생략)

<신설>
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

①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4. (현행과 같음)

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1. ~5. (현행과 같음)

③(현행과 같음)

부 칙

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